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

977

제출년월일: 2019년 8월 7일 제 출 자: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식생활종합지원센터는 『식생활교육지원법』 제3조 및 『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지원조례』(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또는 설치)에 의거 추진하고자 하는 사무로.
- 나. 식생활 및 영양 관련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서울시민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과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

『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○ 위탁기간 : 2020.1.1. ~ 2022.12.31.(3년)

○ 위탁사무 :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

- 서울시 식생활 및 영양 정책 개발 및 관련 사업 지원
- 서울시 올바른 식생활 환경 조성 및 식생활 정보 플랫폼 운영
- 맛체험터 및 서울시민음식학교 운영
- 서울시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 지원
-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소요예산 : 10억원 (2020년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신규위탁)

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『식생활교육지원법』제3조
- 『식생활교육지원법』제25조2 제1항 및 제4항
- 『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지원조례』제3조
- 『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지원조례』제11조
- 『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제4조 제1항

○ 필요성

- 고령화, 1인 가구 및 만성 질환 증가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으로 인해 건강한 식생활과 영양 관리에 대한 공공의 역할이 커지고 있어
- 서울시민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과 나아가 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·운영 중인 식생활종합지원센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규모와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이 필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[식생활교육지원법]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·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제25조2(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
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

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[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]

제3조(서울특별시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·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- 제11조(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또는 설치) ① 시장은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를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으며,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③ 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- 1.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식생활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
- 2. 식생활 교육 관련 주체 간의 연계망 구축 지원
- 3.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지원
- 4. 식생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
- 5. 학교 및 어린이집 등에서의 식생활교육 지원
- 6. 다른 시·도 및 국가의 식생활교육 추진활동과의 협력 및 정보제공
- 7.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
- 8.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3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 지원센터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
- 2.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3.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정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
- 4. 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지정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
- ⑥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·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및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.

[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]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수 있다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※ 작성자 : 식품정책과 식생활개선팀 이인선 (☎2133-4739)